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75호 2019. 11. 4(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2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39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 56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4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고시 ----- 6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7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6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8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4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제6조제1항 중 “홍보미디어과”를 “홍보정책과”로 한다.

제6조제2항제8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종합상황실란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같은 표 인력동원 지원반란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같은 표 건설·수송·장비동

원지원반란 중“건설과장”을 “도시기반과장”으로, “건설행정담당”을 “도시관리담당”으로, “교통행정담당”을 “교통정책담당”으로, 같은 표 보급·급식지원반란 중“생활경제담당”을 “경제정책담당”으로, 같은 표 통신·전산지원반란 중“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의 공표부서란 중“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같은 표 제10호의 공표부서란 중 “환경보전과”를 “환경관리과”로, “환경보전과”를 “생태하천과”로, “환경보전과”를 “클린도시과”로, 같은 표 제11호의 공표부서란 중 “건설과”를 “도시기반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생활보장과장, 희망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인재육성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을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정보육과장, 교육혁신과장,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복지기획팀장”을 “복지정책팀장”으로, “여성아동팀장”을 “여성가족팀장”으로, “청소년팀장”을 “청소년육성팀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재육성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청소년담당”을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과장”을 “생태하천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건설과장”을 각각 “생태하천과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총괄실장”을 “환경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전관리업무담당실장”을 “안전관리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 홍보미디어과장, 여성보육과장”을 “안전총괄과장, 홍보정책과장, 가정보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건축과”를 “주택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여성보육과”를 각각“가정보육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구주관부서란 중 “인재육성과”를 “교육혁신과”로, “홍보미디어과”를 “홍보정책과”로, 같은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구주관부서란 중 “안전총괄실”을 각각 “안전총괄과”로, 같은 표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구주관부서란 중 “환경보전과”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로, “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건설과”를 “도시기반과”로, “교통민원과”를 “교통정책과”로, “환경보전과”를 “생태하천과”로, 같은 표 제17호 서구주관부서란 중 “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을 “교통정책담당”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21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5% 이내	33.5% 이내	29% 이내	5%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이내	97%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	34% 이내	33% 이내	33%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1,165			-		
정무직 계	<u>1</u>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1,160</u>			-		
2급	1	1				
4급	7	5	1	1		
5급	<u>69</u>	<u>39</u>	2	6	1	21
6급 이하 계	1,083			-		
연구직 계	<u>1</u>					
연구사	1			-		
별정직 계	<u>3</u>			-		
6급 상당 이하 계	3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단·실·국장·과장”을 “단·실·담당관·국장·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가좌1동장”을 “가좌1동장, 마전동장”으로 한다.

별표 1,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소·동”을 “단·실·관·과·소·동”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인종류별란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교통민원과”를 “차량민원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경제담당”을 “경제정책담당”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교통행정담당”을 “주차행정담당”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별표 1]

구분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소통협력	1.	구청장 직소민원(온라인 포함) 관리
담당관	2.	현장 구청장실 운영
	3.	갈등조정 종합관리
	4.	민원조정 및 부서지정·분류
	5.	갈등전문가 위촉·운영
	6.	갈등대상사업관리 및 교육
	7.	소통1번가 총괄
	8.	민원분석 틀 운영
	9.	민원 빅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예보(온·오프라인)
	10.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및 조치
	11.	민원만족도 조사 및 평가
	12.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1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서버유지 관리
	14.	소셜미디어 운영활성화 및 블로그 기자단 관리
	15.	구분청 및 산하기관 도메인 유지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홍보정책과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3.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4. 고시·공고·공보 발간에 관한 업무
	5. 구보(구청신문) 발간·배부
	6.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7. 행정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행정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전산장비, PC, S/W)
	9. 구본청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10.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
	11.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 관리
	12. 정보화교육(직원 및 구민) 실시
	13.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
	14.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15. 기타 정보·IT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17. 지역정보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18. 사랑의 PC 무상보급 및 무상수리
	19.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점검
	20.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운영
	2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
	2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
	23. 스마트워크 추진 및 원격근무 IT서비스 지원(클라우드, GVPN 등)
	24. u-City 사업 추진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재 무 과	1. 각종 회계관리
	2.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3. 공사의 도급인부와 공급운반
	4.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5. 회계문서의 심사 및 업무지도
	6. 공사·제조·물품구입 수선의 입회
	7.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8. 회계관리 직인 보관 관리
	9. 회계증빙서류 보관
	10. 출입업자 지정 및 입찰업자 지명
	11. 시유 잡종재산의 유지관리
	12.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관리
	13. 물품정수관리 및 수납계획 수립
	14. 관용차량의 정수조정 및 관리 지정
	15. 물품관리 지도 감독
	16.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의 유지관리
	17. 재물조사
	18.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련 국가소송업무 수행
	19. 은닉국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인 업무
	20. 차량구입 및 운영관리
	21. 차량 운전원 지도감독 및 관리
	22.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계획·발굴추진 및 민자유치
	23. 사계절썰매장 지도 감독
	24.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운영
	2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26.	행정선 관리
	27.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총괄
	2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9.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 설계용역, 공사시행 및 예산집행
	30.	동청사 증축 및 대수선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31.	청사 시설관리 위탁업체 및 청소 지도감독
	32.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증축·대수선 포함, 조경분야 제외)
	33.	구청사 시설물 관리용 차재 기구의 출납 보관
	34.	구청사 전기설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
	35.	청사 소방 및 방화관리
	36.	그 밖의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청사관리 사무
	37.	구 자금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아동행복과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생활가정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가정위탁아동 책정 및 지원
	4.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 지원
	5.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입양아동 등록 및 지원
	1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11. 요보호아동 시설 입소 의뢰
	12. 아동수당 업무추진
	13.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14. 아동지킴이 운영
	15. 위기아동발굴
	1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36.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37.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38. 드림스타트 대상자 관리
	39. 드림스타트 복지 세부 프로그램 운영
	40.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4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42.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환경관리과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
	2.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
	3.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4.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5. 각종 중규모사업의 환경성 검토
	6.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7. 환경기술인 교육
	8. 환경보전 대구민 홍보
	9.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11. 환경관리 민원처리
	12.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조사
	13. 토양오염 실태조사
	14.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15.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16.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17. 하천오염행위 단속
	18. 환경 사회복무요원관리
	19. 환경관련 오염도검사자료 관리
	20.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21. 대기·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22. 환경재난방지계획 수립 시행
	23. 수질·대기·환경오염자동측정망(TMS)운영
	24.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수리
	25. 환경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2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연안해양 포함)
	27.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8. 증수도,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9.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항
	30. 환경관련 정책, 시책, 현안사항 업무
	31. 환경사범 수사 업무
	32.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3. 절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3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수리
	35.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36. 생물다양성관리사업
	37.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38. 야생동물 구호
	39.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40. 기후변화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41.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42.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전기, 수도)
	43. 녹색구매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
	44. 기후환경네트워크 관련 업무 추진
	45.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46.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관리
	47.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관리
	48. 먹는샘물공동시설(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생태하천과	1.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부지 점용허가
	3.	하천 수익자부담금 징수
	4.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정자료 작성
	5.	하천사용료 기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6.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지정 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
	7.	하수도 및 지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8.	행정재산(구거)의 용도 폐지
	9.	도시계획사업(구거, 하천)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0.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3.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4.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5.	건설공사(하천하수분야)의 시행 및 지도
	16.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17.	하수도 사용료 집계
	18.	지하수 사용량 검침
	19.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
	20.	하수도 사용계량기 설치 및 교체
	21.	하수도 종별 책정 및 변경
	22.	지하수 수질검사
	23.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무
	24.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무
	25.	하천유지관리

	26.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7.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선정
	28.	소하천 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 운영
	29.	하천감시
	30.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1.	공공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32.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33.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무
	34.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35.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관리
	36.	배수펌프장 관리
	37.	비점오염저감시설물 관리
	3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3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40.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
	41.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협의 및 준공검사
	4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감독
	43.	개방화장실 지도 점검
	44.	재래식 화장실 개량 추진
	45.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46.	하천오염도 검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위생과	1.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공중위생업소의 영업(변경) 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폐업 신고 처리
	3.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관리 및 행정처분
	4.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수준서비스 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해촉 및 감시활동 관리
	6. 공중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8.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9.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변경) 처리
	10. 위생용품 제조업 품목제조보고 신고 처리
	11.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 관리
	12. 위생용품 및 위생물수건 수거접사 실시
	13.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5.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6.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 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7.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
	19.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설정 관리에 관한 사항
	20.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관리
	21. 자사제조용 및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사후관리
	22.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
	23.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4.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관리 및 지급
	25. 이물 신고에 따른 소비·유통·제조단계 조사 업무

26.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7.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28.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9.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민원처리
31.	식품 및 공중 무신고업소 단속 및 조치
32.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33.	식중독 예방사업 관리
34.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및 관리
35.	식품 접객업소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36.	재난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 및 과태료 처분 업무
37.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변경)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38.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영업등록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39.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40.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변경) 및 지위승계, 폐업신고 처리
41.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변경, 종료신고 처리
42.	식품품목제조 보고(변경)관리
43.	조리사 면허증 발급
44.	나트륨 저감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4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47.	서구브랜드식품 지정관리
48.	음식문화축제 개최
49.	나트륨,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
50.	우수음식점(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등) 지정관리
51.	식품진흥기금 운용 업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정책과	1.	교통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2.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3.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5.	교통공안협의
	6.	교통체계관리(T.S.M)지역사업 추진
	7.	교통관련 단체관리(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8.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에 관한 업무
	9.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0.	교통영향평가 심의진달
	11.	교통량 감축업무(교통유발부담금, 승용차 선택요일제)
	12.	버스노선개편에 관한 협의업무
	13.	교통취약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지정 및 표지판 설치
	15.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택시, 버스, 화물)
	16.	자동차정류장 설치에 관한 사항
	17.	총무계획(교통실시) 수립 및 시행
	18.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19.	창고업(화물유통촉진법)에 관한 사무
	2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21.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
	22.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
	23.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2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25.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확인 관리
	2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 포함) 주기적 신고 처리
	27.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28.	화물자동차 유류 복지카드 승인 처리
	29.	사업용 운수사업자(버스, 택시, 화물) 전국 전산망 등재
	30.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및 화물터미널 설치계획 추진
	31.	차고시설 신고업무
	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주차관리과	1.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운영
	2.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폐지
	3.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개정, 폐지
	4.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5.	민간유희시설 주차장 설치 및 개방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위탁 및 지도감독
	7.	기계식 주차장 지도감독
	8.	거주지 우선 주차제 및 그린파크 사업
	9.	공영주차장 체납요금 징수에 관한 업무
	10.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불법 주·정차 관련시설물(CCTV,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
	12.	주차구획선 정비 및 관리(이면도로)
	13.	민영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협의 및 지도감독
	1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16.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17.	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 주차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18.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에 관한 사항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도시기반과	1.	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
	3.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기본자료조사
	4.	도로부지 점용허가
	5.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
	6.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정자료 작성
	7.	국공유재산(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로점용 및 도로공작물제거 설치허가
		나.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8.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장비업체)등에 관한사항
	9.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0.	지하도겸 상가유지관리
	11.	도로, 기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12.	구도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점용료징수 (단, 2개구 이상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점용면적이 많은 구에서 타구와 협의 처리)
	13.	행정재산(도로)의 용도 폐지
	14.	도시계획사업(공원, 구거, 하천제외)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5.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7.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9.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0.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21.	도로관리계획 수립 시행 (도로폭 20미터 이하)
	22.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23.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시행 및 지도 (도로폭 20미터 이하)
24.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25.	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와 시공감독 (도로폭 20미터 이하)	

26.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27.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기 및 변경
28.	도로폭 20미터 이하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29.	사도 개설허가
30.	구청장 포괄사업비 관리
31.	굴삭기 유지관리
3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33.	콘크리트 포장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34.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로구역 결정
	나.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다.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마. 설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바.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
	사.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아. 접도구역의 지정 등
	자. 비 관리청 사업의 지도감독
35.	도로경관 조성사업
36.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37.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
	가. 가로등시설물,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나. 가로등시설물, 보안등 이설협의
	다. 도로조명시설 검사 및 안전점검
	라. 가로등시설물 인수 · 인계
	마. 가로등 교통사고 처리
	바. 가로등 굴착관련 업무

[별표 3]		
출장소 사무분장표 (제11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검 단 출 장 소	1.	출장소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관리
	4.	회계관리 및 물품출납 보관
	5.	공보, 홍보,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향교, 사찰,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공채·지방채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관리
	9.	상수도, 자연보호, 수질보전에 관한 사무
	10.	농지개량에 관한 사무
	11.	환경, 위생, 산업, 상공에 관한 사항
	12.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13.	건설에 관한 사무
	14.	건축에 관한 사무
	15.	자연재해 방재대책
	16.	보안등에 관한 사무
	17.	재산세 과세·징수
	18.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징수
	19.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20.	지방세 체납관련 민원 처리 및 체납액 징수
	21.	관허사업 제한 및 철회
	22.	도시녹화
	23.	산불예방 및 진화
	24.	등산로 유지보수
	25.	가로수 식재 및 관리

	26.	공동주택 조경협회
	27.	도시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8.	녹지조성
	29.	조경시설 유지관리(출장소 조경분야 포함)
	30.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
	31.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부과
	32.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33.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법적이행사항 (보험가입, 안전점검,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
	34.	가로수·수벽 점용
	35.	시민 기념식수
	36.	시설녹지 유지관리
	3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7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165	749	21	86	39	270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160	744	21	86	39	270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관·기술서기관		3	3					
5급 소계		69	38	2	6	1	22	
행 정		14	12	2				
의 무		2			2			
운 전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0	10					
행 정 · 사 회 복 지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녹 지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 환 경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방 송 통 신		1					1	

행정 · 공업 · 농업	3	1				2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녹지 · 시설	2	1				1	
행정 · 보건 · 환경	2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3			3			
6급 소계	279	196	8	21	9	45	
행정	89	71	4	1	1	12	
세무	16	14			2		
전산	1	1					
사회복지	14	14					
속기	2		2				
공업	7	7					
농업	1	1					
녹지	6	5			1		
수의	1	1					
보건	5	4		1			
의료기술	2			2			
간호	1			1			
환경	6	6					
시설	21	19			2		
방송통신	2	2					
운전	4	2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 · 세무	12	9				3	

행정 · 사회 복지	32	9	1			22	
행정 · 공업	2	2					
행정 · 농업	1				1		
행정 · 녹지	2	1				1	
행정 · 보건	5	2			1	2	
행정 · 환경	6	4				2	
행정 · 시설	10	10					
행정 · 방송 통신	2	1				1	
사회 복지 · 간호	1			1			
공업 · 환경	1	1					
녹지 · 시설	1	1					
보건 · 간호	1			1			
보건 · 환경	1	1					
식품 위생 · 간호	1			1			
의료 기술 · 간호	3			3			
환경 · 시설	1	1					
시설 · 방재 안전	1	1					
행정 · 세무 · 농업	1					1	
행정 · 공업 · 시설	2	1			1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 기술 · 간호	7			7			
식품 위생 · 의료 기술 · 간호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 기술 · 약무 · 간호	1			1			
7급 소계	346	234	5	19	16	72	(1)
행정	132	83	4		2	43	(1)
세무	18	18					
전산	5	5					

사 회 복 지	34	23				11	
공 업	10	8			2		
농 업	2	1			1		
녹 지	8	7			1		
수 의	1	1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7	11		5	1		
의 료 기 술	4			4			
간 호	4			4			
환 경	13	13					
시 설	52	47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2	2					
운 전	16	1		1	1	13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2	2					
사 무 운 영	8	2	1		2	3	
행 정 · 세 무	3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2				2	
행 정 · 시 설	2	2					
농 업 · 수 의	1	1					
보 건 · 간 호	1			1			
식품위생 · 의료기술	2			2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2			2			
8급 소계	288	170	4	34	9	71	(5)
행 정	117	71	3	2		41	(5)
세 무	9	9					
전 산	2	2					
사 회 복 지	45	19		2		24	
공 업	7	7					

농	업	1	1					
녹	지	6	5			1		
보	건	7	3		2	2		
의	료	1			1			
간	호	19			19			
환	경	13	13					
시	설	28	23			5		
방	송	3	3					
운	전	6		1	1		4	
전	화	1	1					
기	계	1	1					
사	무	1	1					
행	정	1	1					
행	정	7	6				1	
행	정	1					1	
행	정	1						
행	정	3	3					
공	업	1	1					
공	업	1				1		
보	건	1			1			
식	품	1			1			
보	건	3			3			
보	건	1			1			
9급 소계		170	100	1	5	4	60	(3)
행	정	66	32	1	2	1	30	(3)
세	무	9	8			1		
사	회	34	5		1		28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5	3			2		

보	건	1			1			
의	료	1			1			
환	경	12	12					
시	설	19	19					
방	재	2	2					
방	송	2	2					
운	전	2					2	
사	무	1	1					
행	정	4	4					
행	정	1	1					
행	정	2	2					
연	구	1	1					
기	록	1	1					
별	정	3	3					
7급	상당	1	1					
비	서	1	1					
8급	상당	1	1					
비	서	1	1					
9급	상당	1	1					
비	서	1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9.11.4.개정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165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1,160	
		2급	1	행정 1
		4급	7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3
		5급	69	행정 14, 의무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0,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3,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2, 행정·보건·환경 2,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6급	279	행정 89, 세무 16, 전산 1, 사회복지 14, 속기 2, 공업 7,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5, 의료기술 2, 간호 1, 환경 6, 시설 21, 방송통신 2, 운전 4,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12, 행정·사회복지 32,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녹지 2, 행정·보건 5, 행정·환경 6, 행정·시설 10, 행정·방송통신 2, 사회복지·간호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3,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7,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346	행정 132, 세무 18, 전산 5, 사회복지 34, 공업 10, 농업 2, 녹지 8,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4, 환경 13, 시설 52,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운전 16,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2, 사무운영 8,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시설 2, 농업·수의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8급	288	행정 117, 세무 9, 전산 2, 사회복지 45, 공업 7, 농업 1, 녹지 6, 보건 7, 의료기술 1, 간호 19, 환경 13, 시설 28, 방송통신 3, 운전 6,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7, 행정·농업 1, 행정·간호 1, 행정·시설 3,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170	행정 66, 세무 9, 사회복지 34 , 공업 8, 농업 1, 녹지 5, 보건 1, 의료기술 1, 환경 12, 시설 19, 방재안전 2, 방송통신 2, 운전 2 , 사무운영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별정직	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구 분 청	계		749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744	
		2급	1	행정 1
		4급	5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3
		5급	38	행정 1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0, 행정·공업·농업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6급	196	행정 71, 세무 14, 전산 1, 사회복지 14, 공업 7, 농업 1, 녹지 5, 수의 1, 보건 4, 환경 6, 시설 19, 방송통신 2, 운전 2,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9,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4, 행정·시설 10, 행정·방송통신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환경 1,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234	행정 83, 세무 18, 전산 5, 사회복지 23, 공업 8, 농업 1, 녹지 7,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3, 시설 47,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운전 1,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2, 사무운영 2,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 행정·시설 2, 농업·수의 1
		8급	170	행정 71, 세무 9, 전산 2, 사회복지 19, 공업 7, 농업 1, 녹지 5, 보건 3, 환경 13, 시설 23, 방송통신 3,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시설 3, 공업·보건 1
		9급	100	행정 32, 세무 8, 사회복지 5, 공업 8, 농업 1, 녹지 3, 환경 12, 시설 19, 방재안전 2, 방송통신 2, 사무운영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21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4, 속기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4,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3, 운전 1
		9급	1	행정 1
보 건 소	일반직	소계	86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4급	1	기술 1
		5급	6	의무 2,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6급	21	행정 1,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1, 사회복지·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3, 행정·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7,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19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4, 운전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8급	34	행정 2, 사회복지 2,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19,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1, 보건 1, 의료기술 1,
출 장 소	일반직	계	39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9	행정 1, 세무 2, 녹지 1, 시설 2,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6	행정 2, 공업 2, 농업 1, 녹지 1, 보건 1, 시설 5, 운전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1
		8급	9	녹지 1, 보건 2, 시설 5, 공업·환경 1
		9급	4	행정 1, 세무 1, 녹지 2
동	일반직	계	270	
		5급	2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6급	45	행정 12, 운전 1,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2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세무·농업 1
		7급	72	행정 43(행정복지 1), 사회복지 11, 운전 13, 사무운영 3, 행정·사회복지 2
		8급	71	행정 41(행정복지 5), 사회복지 24, 운전 4, 행정·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9급	60	행정 30(행정복지 3), 사회복지 28, 운전 2

[별표 2]2019.11.4.개정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749	
미래기획단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행정 1, 시설 2
		7급	3	행정 1, 환경 1, 시설 1
		8급	1	행정·시설 1
		9급	2	시설 2
기획예산실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 1
		6급	8	행정 5, 세무 1, 방송통신 2
		7급	12	행정 10,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8급	3	행정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9급	3	행정 1, 방송통신 2
감사실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7급	6	행정 4, 시설 2
소통협력담당관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행정 3
		7급	4	행정 1, 전산 1, 사회복지 1, 시설 1
		8급	2	전산 1, 행정·전산 1
		9급	1	행정 1
총무과		계	31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27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6급	8	행정 8
		7급	6	행정 5, 행정·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급 별 내역
	별정직	8급	7	행정 7
		9급	1	행정 1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홍보정책과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6	행정 2, 전산 4
		8급	3	행정 2, 전산 1
재무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3, 운전 1, 시설 1, 기계운영 1
		7급	8	행정 5, 시설 2, 운전 1
		8급	5	행정 4, 공업 1
		9급	1	행정 1
세무 1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6급	10	세무 6, 행정·세무 4
		7급	10	세무 9, 행정·세무 1
		8급	4	행정 1, 세무 3
		9급	4	행정 2, 세무 2
세무 2과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 1
		6급	9	세무 6, 행정·세무 3
		7급	9	세무 8, 행정·세무 1
		8급	5	세무 5
		9급	7	세무 6, 행정 1
민원봉사과	일반직	계	23	
		소계	22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3	행정 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8	행정 7, 사무운영 1
		9급	5	행정 5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토지 정보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시설 4, 행정·시설 1
		7급	13	행정 2, 시설 10, 행정·시설 1
		8급	5	행정 3, 시설 2
		9급	1	시설 1
복지 정책과	일반직	소계	36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7급	11	행정 3, 사회복지 7, 행정·사회복지 1
		8급	12	행정 1,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2
		9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노인 복지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7급	6	행정 1,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1
		8급	3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장애인 복지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2
		7급	6	사회복지 6
		8급	3	사회복지 3
		9급	5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3
교육 혁신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6	행정 6
		8급	3	행정 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급별내역
		9급	2	행정 2
가 정보육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행정 2, 사회복지 4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4
		8급	8	행정 3,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아 동 행 복 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7급	3	행정 2, 보건 1
		8급	5	행정 2, 행정·사회복지 3
		9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4	행정 4
		8급	6	행정 6
클 린 도 시 과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환경 1
		6급	5	환경 3, 행정·환경 1, 공업·환경 1
		7급	3	환경 3
		8급	4	행정 1, 환경 3
		9급	9	공업 3, 환경 6
환 경 관 리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환경 1
		6급	3	환경 2, 행정·환경 1
		7급	4	환경 4
		8급	6	행정 1, 환경 5
		9급	7	환경 5, 행정·환경 2
생 태 하 천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환경·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7	행정 1, 공업 2, 시설 1, 운전 1, 보건·환경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8	행정 1, 공업 1, 환경 2, 시설 3, 사무운영 1
		8급	2	보건 1, 시설 1
		9급	3	행정 1, 공업 1, 시설 1
안전 총괄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2,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환경·시설 1
		7급	6	행정 2, 환경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1
		8급	4	공업 1, 시설 1, 방송통신 2
		9급	4	행정 1, 시설 1, 방재안전 2
자원순환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7	행정 3, 행정·환경 2, 환경 1, 행정·보건·환경 1
		7급	8	행정 5, 보건 1, 환경 2
		8급	7	행정 2, 환경 5
		9급	2	행정 1, 환경 1
위 생 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보건 1
		6급	6	보건 4,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8급	3	보건 2, 공업·보건 1
		9급	1	행정·보건 1
경 제 에 너 지 과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6	행정 3, 공업 1, 농업 1, 수의 1
		7급	11	행정 4, 공업 3, 농업 1, 수의 1, 해양수산 1, 농업·수의 1
		8급	3	행정 1, 농업 1, 시설 1
		9급	1	농업 1
기업지원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4	행정 1, 공업 1, 시설 1, 기계운영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8급	1	공업 1
		9급	3	행정 1, 공업 2
사회적경제 일자리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4	행정 4
		8급	6	행정 6
		9급	1	행정 1
교통정책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공업·시설 1
		6급	5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7급	4	행정 3, 공업 1
		8급	5	행정 3, 공업 1, 시설 1
		9급	2	행정 2
주차관리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세무 1, 시설 1
		7급	2	행정 1, 시설 1
		8급	4	행정 4
		9급	1	사무운영 1
차량민원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행정 2, 행정·세무 2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8	행정 7, 세무 1
		9급	3	행정 2, 공업 1
도시기반과	일반직	소계	26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1, 공업 2, 시설 1, 사무운영 1, 행정·시설 1
		7급	7	행정 2, 공업 1, 시설 3, 기계운영 1
		8급	10	행정 1, 공업 1, 시설 6, 기계운영 1, 행정·시설 1
		9급	1	공업 1
건축과	일반직	소계	27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1, 시설 3, 환경·시설 1
		7급	5	시설 5
		8급	8	행정 1, 공업 2, 시설 5
		9급	8	행정 1, 시설 7
주 택 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시설 1
		6급	4	시설 2, 행정·시설 2
		7급	5	사회복지 1, 시설 4
		8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9급	3	사회복지 1, 시설 2
도 시 개 발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2, 시설 2,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7급	11	행정 3, 시설 8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2	시설 2
도 시 재 생 경 관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2, 시설 1, 행정·시설 3
		7급	7	행정 1, 시설 5, 사무운영 1
		8급	3	행정 2, 시설 1
		9급	4	행정 1, 시설 3
공 원 녹 지 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6	녹지 5, 행정·녹지 1
		7급	7	녹지 7
		8급	5	녹지 5
		9급	3	녹지 3

[별표 6]2019.11.4.개정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중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70	
검 암 경 서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6	행정 5,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연 희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3
		9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청 라 1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보건 · 환경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3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청 라 2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녹지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환경 1
		7급	2	행정 2
		8급	6	행정 4,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청 라 3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가 정 1 동	일반직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보건 1
		7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8급	2	행정 1, 운전 1
가 정 2 동	일반직	9급	3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가 정 3 동	일반직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신 현 원 창 동	일반직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운전 1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석 남 1 동	일반직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8급	2	행정 2
석 남 2 동	일반직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6급	2	행정·환경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석 남 3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1	행정 1(행정복지)
가 좌 1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1,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2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좌 3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4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검 단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세무·농업 1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사회복지 1
		8급	2	행정 2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불로대곡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원 당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보건·시설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당 하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오류왕길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2	행정·보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3
마 전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2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운전 1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정비안 작성-심사절차-보고사항 및 공포-발령”을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정비안 작성·심사절차·보고사항 및 공포·발령”으로 한다.

제3조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기간에”를 “오랫동안”으로, “발하는”을 “내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시하는”을 “보여 주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법규 등을”을 “조례·규칙·훈령·예규 (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로,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용중에”를 “내용 중”으로, “명칭-복합명사-고유명사-기관”을 “명칭·복합명사·고유명사·기관”으로, “쓴다.”를 “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간주한다.”를 “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행하여야 한다.”를 “선행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정·-전부개정·-폐지 시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정·전부개정·폐지 시에는 신·구조문대비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를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필요하”를 “필요한”으로 한다.

3. 사전승인·허가대상인 경우 승인·허가 관련문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를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저촉되는지”를 “위반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모호한”를 “분명하지 아니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한글맞춤법-띄어쓰기-법규용어의 통일-구성체제-표현의 적정성-구비서류등”을 “한글맞춤법·띄어쓰기·법규용어의 통일·구성체제·표현의 적정성·구비서류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를 각각 “제7조에”로, “심의의안”을 “심의 의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심의를”을 “서면심의로”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권리-의무”를 “권리·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을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작성-검토”를 “작성·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심의-의결”을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송부하여”를 “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훈령-예규”를 “훈령·예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령-예규”를 “훈령·예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훈령-예규안의 작성-검토”를 “훈령·예규안의 작성·검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령후”를 “발령 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고 및 공포-발령”을 “보고 및 공포·발령”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조례-규칙안의 보고)”를 “(조례·규칙안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는 공포예정 15일전”을 “대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규칙안 전문을 첨부하여”를 “조례·규칙안 전문을 붙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자치법규 등의 정비지사)”를 “(자치법규 등의 정비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를 “때”로, “무무”를 “유무”로, “통보하여”를 “알

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포-발령)”을 “(공포·발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조례·규칙·훈령·예규”로 한다.

-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과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V서구 V O O O O O V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2조(정의)

.....

(중 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조례안”으로 표기

※ “인천광역시 서구 OOOOOO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문안을 사용하지 **아니함**.

(2) 전문개정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V 서구 V O O O O O V 조례 V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V 서구 V O O O O O V 조례 V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V 서구 V O O O O O V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중 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명은 **전문개정**이므로 “----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
- ※ 개정문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O O O O O O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 ※ 개정문안 다음에는 바뀌는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의 전문**을 기재
- ※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전에 첨부 가능

(3) 부분개정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V서구 V O O O O O V조례 V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V서구 V O O O O O V조례 V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OOO”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 2.

(중략)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

(중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명은 부분개정이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
- ※ 개정문안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부분개정문안을 기재
- ※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4) 폐지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V서구 V △△△△△ V조례 V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V서구 V △△△△△ V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문 작성요령]

1.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

제명 “○○○” 을 “○○○” 로 한다.

2. 조문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제○조의 제목 중 “○○” 을 “○○” 으로 한다.
제○조의 제목 “(○○○)” 을 “(○○○)” 로 한다.

3. 조 · 항 · 호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제○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④

제○조제○항제○호 중 “---” 를 “---” 로 한다.
제○조제○항 중 “---” 를 “---”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 을 “---” 로 하며, 같은 조 제○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 후단 · 단서를 신설 · 개정하는 경우

제○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 단서 중 “---” 을 “---” 로 한다.
제○조제○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5.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의2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⑤

제○조제○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 다수조문에서 동일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항 및 제○항 중 “-----” 을 각각 “-----” 로 한다.

7. 기존의 조문에는 변동 없이 장·절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제○조 다음에(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제○조 다음의(앞의) “제○장 ○○○” 을 삭제한다.

8. 별표·별지서식을 신설·개정하는 경우

별표 1의 ○○○란 중 “----”을 “----”로 한다.

별표 3 중 ○○○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별지 제2호서식 중 “----”을 “----”로 하고, “--”을 “--”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04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고시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개정이유

-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변경, 현행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사무소 위치 변경 및 협의회 부담금 관리에 필요한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제3조(구성)
 - 2018. 10. 10.자 탈퇴한 인천 부평구 및 2019. 5. 20.자 탈퇴한 경기도 시흥시의 명단을 삭제
-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및 제9조(회의)
 - 규약 제4조에 따르면 사무소의 위치가 ‘부천시’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5항에는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를 현행 협의회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

○ 제17조(회계)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단체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규정하고자 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이하“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광명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로 한다.

② 위원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청장·강화군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회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인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는 협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7조(기능) 협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의 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2, 5, 8,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순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회장 시·군·구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7조(회계) ① 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협의회회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며,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약 이외의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u>부천시 · 광명시 · 시흥시 · 김포시</u>, 인천광역시 <u>계양구 · 부평구 · 서구 · 강화군</u>, 서울특별시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로 한다.</p> <p>② 위원은 경기도 <u>부천시 · 광명시 · 시흥시 · 김포시장</u>, 인천광역시 <u>계양구 · 부평구 · 서구청장 · 강화군수</u>, 서울특별시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청장으로 한다.</p> <p>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p> <p>① 협의회는 사무소는 <u>부천시</u>에 둔다.</p> <p>② 사무소의 소재지인 <u>부천시</u>에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p> <p>제9조(회 의)</p> <p>①~④ 생략</p> <p>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u>통보하고 의결사항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하여야 한다.</u></p> <p>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p> <p>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 협의회는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며,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구성)① <u>부천시 · 광명시 · 김포시</u>, <u>계양구 · 서구 · 강화군</u>,</p> <p>② <u>부천시 · 광명시 · 김포시장</u>, <u>계양구 · 서구청장 · 강화군수</u>,</p> <p>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p> <p>① <u>회장이 속한 자치단체</u></p> <p>② <u>회장이 속한 자치단체</u></p> <p>제9조(회 의)</p> <p>①~④ 생략</p> <p>⑤ <u>통보한다.</u></p> <p>제17조(회계)</p> <p>① 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한다.</p> <p>②~③ (현행 제1항부터 제2항까지와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0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경명대로 810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1.0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2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신안 (대표자 박순일)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2블록
 - 나. 대지면적 : 57,524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88,655.9794m²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2개동 1,073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442,447,034천원
4. 사업기간 : 2019. 11. 01. ~ 2022. 07. 31.
5. 변경사항

가. 단위세대(실명, 창호, 가구 등)

나. 폐기물보관시설 위치 변경

다. 오기 정정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7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0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현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소용량 용기(2L) 및 봉투(1L)를 추가하며, 현 수수료 책정기준에 맞춰 그 가격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2L용량 및 전용봉투 가격 1L 추가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 설치 협의 근거 마련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각종 신고서식 삭제
- 다량배출사업장 실적보고 기한 변경
- 다량배출사업장 연 지도점검 횟수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560-4412 (FAX 560-2760)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9-176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9.11.04. ~ 2019.11.18.(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1가0768외 11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11가0768	김*란	2019.10.30	
2	53가6695	김*희	2019.10.23	
3	87다3195	김*희	2019.10.23	
4	45소3466	오*원	2019.10.16	
5	12마4416	김*하	2019.10.15	
6	59두3461	이*재	2019.10.14	
7	50고6083	홍*열	2019.10.11	
8	52가7013	정*오	2019.10.11	
9	서울38더9480	임*빈	2019.10.10	
10	91어6160	주식회사 태*종합건설	2019.10.10	
11	92우3660	주식회사 태*종합건설	2019.10.10	
12	68무7069	주식회사 태*종합건설	2019.10.10	